

기강감사

기강감사 결과 보고서

감 사 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근무 중 태도 점검·민원제보·비위 사실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조치, 책임자 문책 등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근무 기강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감사 대상 및 범위

- ☐ 감사 대상 : 전 부서
- ☐ 감사 범위 : 취업규칙 위반행위 등 복무 전반

3. 감사 기간 및 인원

- ☐ 감사 기간 : 2026. 5. 6. ~ 2026. 6. 5.
- ☐ 감사인 : 감사실 직무감찰팀 팀장 외 2인

[1] [경고 2人, 주의]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처

관 련 자 : AAA, BAA, C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상호 존중과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채용 등 인사 업무 시 공정성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AAA는 관리자임에도 소속 직원과 갈등 과정에서 적절히 중재하지 못하고 파견 채용과정에서 합리적 평가 없이 주관적 판단 등으로 인해 선별에 부당개입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다.

관련자 BAA는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파견직 채용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하였다.

관련자 CAA는 갈등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질서를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련자 AAA, BAA에게 각각 경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경고)

▼처장은 관련자 CAA에게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감봉] 사항

제 목 : 취업규칙 등 위반

조치부서 : ☆본사 ▽처

관 련 자 : DAA

내 용

1.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직원은 퇴직급여 등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지급 대상자 및 금액 등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련자 DAA는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 명단에 대한 사전 확인을 소홀히 하고, 퇴직연금 유형을 잘못 적용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관련자 DAA에게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감봉)